

교원 소급임용 금지

○ 「사립학교법」

제2조(정의) 4. “임용”이란 신규채용, 승진, 전보, 겸임, 파견, 강임(降任), 휴직, 직위 해제, 정직, 복직, 면직,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.

제55조(복무)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· 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○ 「교육공무원법」

제2조(정의) ⑥ 이 법에서 “임용”이란 신규채용, 승진, 승급, 전직(轉職), 전보(轉補), 겸임, 파견, 강임(降任), 휴직, 직위해제, 정직(停職), 복직, 면직,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. <개정 2012. 12. 11.>

○ 「교육공무원 임용령」

제5조(임용시기) ① 교육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,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된다. [개정 2019.11.5]

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. [신설 2019.11.5]

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해야 한다. [개정 2019.11.5.]

교원 소급임용 금지 적용 항목(1)

○ 전임교원, 강사, 비전임교원 임용 및 면직

- ▶ 전임교원 신규임용, 재임용, 정년보장임용, 의원면직, 정년퇴직, 명예퇴직
- ▶ 강사 임용, 재임용, 의원면직, 직권면직
- ▶ 비전임교원 신규임용, 재계약, 의원면직

※ 강사법(2019년8월)시행 이후 모든 교원의 공개채용 및 매학기 모든 교원의 임면보고가 진행되고 있음

○ 전임교원의 겸직동의, 소속변경, 겸임발령, 휴직, 복직, 파견, 파견복귀

- ▶ 전임교원의 겸직동의, 소속변경, 겸임발령, 파견, 파견복귀
- ▶ 전임교원의 휴직, 복직(3개월)

※ 자연사유서 제출 ≠ 교원인사위원회 승인, 특히 사외이사 겸직동의, 소속변경, 겸임발령 참고

○ 비전임교원(초빙, 명예) 초과강의 배정

- ▶ 정규학기 강좌 : 3월/9월 1일자 이전
- ▶ 정규학기+계절수업 강좌 : 계절수업 개강이전

※ 초과강의에 대한 승인이후 강의가 진행되어야 함

교원 소급임용 금지 적용 항목(2)

○ 강사 특별채용

- ▶ 개강이전 교수자 변경 : 3월/9월 1일자 이전
- ▶ 학기중 교수자 변경 : 교체일 이전
- ▶ 특정인의 연속 특별채용 지양 -> 공개채용으로 진행바람

※ 연속적인 특별채용이 진행되는 해당학과 교과목 파악하여 2021-2학기 공개채용으로 강제전환 예정

○ 강사 의원면직

- ▶ 재임용이 보장되는 기간내에는 학기시작 2개월전까지 서면제출 안내필요
(강사인사규정 제33조(의원면직) 근거)

교원임용 및 복무관련 서류 제출시기

○ 교원인사위원회 개최시기

- ▶ 매월 1,3주차 수요일 교무위원회의 종료 후 개최
※ 이번 5월의 경우 1,3주 수요일 공휴일인 관계로 2,4주 개최예정임(참고)
- ▶ 방학기간 중 6월, 12월 매주 개최

○ 교무팀 문서 제출기한

- ▶ 회의일 최소1개월 이전 교무팀 문서도착
비자발급대상 외국인교원 임용 2개월이전 준비필요
 - ▶ 매월 2,4주차 수요일까지 교무팀 도착분에 대하여
 - ~2주차 수요일 도착분 : 3주차 교원인사위원회의 안건상정
 - ~4주차 수요일 도착분 : 다음달 1주차 교원인사위원회의 안건상정
- ※ 업무 담당의 문서검토 후 서류보완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차기 위원회 안건으로 지연상정될 수 있음